

중앙대학교 대학원생 권리장전

『중앙대학교 대학원생 권리장전』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과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조약 그리고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등에서 인정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그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지적공동체로서의 대학원을 발전시키기 위한 초석을 쌓으며, 대학원생으로서 권리와 자유를 보편적으로 인식하고 더 나아가 효과적으로 준수하기 위해 2017년 3월 0일 본 권리장전을 제정, 선포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권리장전은 중앙대학교 대학원생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을 보장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권리장전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원"은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모두를 포함한다.
2. "대학원생"은 중앙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 박사 및 석·박사 통합과정 수행 중에 있는 학생으로 재학생, 휴학생, 수료생을 포함한다.
3. "조교"는 중앙대학교 대학원생으로서 교육활동, 연구활동, 행정지원 업무 등에 참여하면서 장학금을 받는 교육조교, 연구조교를 말한다.
4. 이하 여기에 정의되지 않은 기본적인 용어들은 학칙에 기재된 정의 또는 사회통념에 따르는 정의와 동일시한다.

제2장 대학원생의 권리

제3조(대학원생의 존엄과 가치) ① 모든 대학원생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연구와 학업은 건강, 안전, 혼인, 가족생활 등 개인의 존엄과 가치에 관계된 사항을 영위할 권리에 우선하지 않는다.
- ③ 대학원생은 모든 신체적, 언어적, 성적 폭력, 따돌림 등으로부터 자유롭고 안전한 환경에서 학업, 연구, 근로할 권리를 가진다.

제4조(평등권) ① 모든 대학원생은 성별, 종교, 국적, 인종, 연령, 장애, 임신과 출산, 정치적 또는 개인적 성향 등을 포함한 일체의 비합리적이거나 자의적인 사유를 근거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 ② 모든 대학원생은 출신대학의 차이, 편입 여부 등에 따라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제5조(자유권) ① 모든 대학원생은 자신의 사생활에 대한 부당한 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지닌다.

- ② 모든 대학원생은 정해진 학업·연구·근무 시간 이외에는 사적인 활동의 자유를 보장 받는다.
- ③ 모든 대학원생은 사적인 시간에 학내외의 다양한 활동에 어떤 불이익 없이 참여할 권리를 지닌다.

제6조(학업연구권) ① 대학원생은 학업 및 연구의 기회를 보장받으며, 학위과정을 마칠 때까지 부당한 이유로 자신의 학업 및 연구가 중단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 ② 모든 대학원생은 자신의 전공과 연구주제에 관해 전문적인 학업, 연구, 훈련 및 지도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대학원생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당한 절차에 따라 학업과 연구에 필요한 적절한 연구 공간 및 학내 지원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제7조(저작권) ① 모든 대학원생은 연구 아이디어 제시, 연구 과정 참여 등 자신이 상당 부분 기여한 연구 출판물에 공저자로 등록될 권리가 있다.

② 모든 대학원생은 해당분야의 학계에서 공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에 따라 자신의 주도적이고,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연구방법을 기반으로 한 연구결과에 대해 주저자로서의 저작권을 가진다.

③ 모든 대학원생은 공동으로 참여한 연구물의 지식재산권은 부당한 저작권 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8조(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 ① 대학원생은 논문지도 및 심사과정에서 부적절한 사례 및 접대의 제공 없이 충실히 지도받을 권리를 지닌다.

② 대학원생은 지도교수 및 논문심사위원회 선정 시 필요한 정보에 접근 할 권리를 지닌다.

③ 대학원생은 사전에 공지된 졸업요건을 충족할 경우 학위를 취득할 권리를 지니며, 졸업관련규정 등의 변경 시 반드시 충분한 일정을 두고 변경 사항을 통보받아야 하며, 필요시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

제9조(조교의 권리) ① 대학원생은 조교로 임용되는 과정에서 공정한 임용절차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여기에는 근로내용, 근로시간, 장학금 등의 관련정보를 구체적으로 알 권리가 포함된다.

② 대학원은 근로활동에 대해 사전에 제공한 근로시간, 근로내용, 장학금의 금액을 근로기간 중에 부당한 이유로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 정당한 사유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대학원생과의 합의과정을 거쳐야 할 권리가 있다.

제10조(복리후생권의 보장 권리) ① 대학원생은 건강하고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위하여 충분하고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를 지니며, 학교는 이를 위한 휴식 공간과 시설을 제공해야 한다.

② 자녀가 있는 대학원생은 학교 및 학과에 출산 및 보육을 위한 적절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모유 수유실 및 육아 휴게공간을 포함한 각종 공적인 출산 및 보육 서비스에 제약 없이 접근할 권리를 지닌다.

제11조(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 ① 대학원생은 이 권리장전에서 명시된 사항들이 제도화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학내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대학원생은 학업 및 연구와 관련된 대학원의 결정과 그 세부사항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권리를 가진다.

제3장 대학원생의 보호

제12조(부당한 일에 대한 거부권) ① 대학원생은 자신의 교육 및 연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업무 지시를 거부할 권리를 가지며, 이러한 거부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② 대학원생은 교수, 교직원 및 동료의 사적 이익을 위한 업무요청을 거부할 권리를 지닌다.

제13조(지도교수 변경의 권리) ① 지도교수는 학위논문 및 연구지도에 주된 역할을 담당하며, 학생을 성실히 지도하여야 한다.

② 지도교수의 휴직, 파견 및 그 밖의 사유로 학생을 지도할 수 없는 경우 학생은 주어진 절차에 따라

지도교수를 변경할 수 있으며, 대학원은 학생의 학업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③ 대학원생은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 불이익 없이 지도교수를 변경 할 권리를 지닌다.

제14조(해결절차) ① 대학원생은 자신의 권리가 불합리하게 침해되거나 심각한 고충과 직면할 때 이를 조사하고 시정할 수 있는 인권전담기구를 이용할 권리를 지닌다. 학교는 이러한 업무를 전문적이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의무를 갖는다.

② 대학원생은 조사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적절한 절차에 따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불합리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비밀보장을 받을 권리를 지닌다.

③ 대학원생은 조사과정에서 자신의 권리침해자로 지목된 상대방과 학업 및 업무처리 과정에서 마주치지 않을 권리를 지닌다.

④ 대학원생은 문제가 적절하게 해결되지 않을 시 학교 정책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지닌다.

⑤ 대학원생은 인권전담기구의 존재 및 이용방법을 입학 시점에 명확히 고지 받을 권리를 지닌다.

제15조(그 밖의 권리) 대학원생의 권리는 본 권리장전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제4장 대학원생의 의무

제16조(권리장전 활용) ① 대학원의 모든 구성원은 이 권리장전에서 명시된 권리를 알고 이를 존중하고 실현해야할 책임을 가진다. 또한 모든 대학원생은 중앙대학교의 구성원으로서 학내 규정 및 절차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